강서 센트레빌 3차 방화 입주자모집공고

▣ 정부가 출자한 대한주택보증㈜에서 분양보증받은 아파트는 안심하고 분양받으셔도 됩니다.
▣ 서울시는 투기과열지구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가 적용되며, 1순위자 중 과거 5년 이내에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하신 분(청약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 2002. 9.5. 이후 청약 관련 예금 가입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자는 세대원전원포함)도 1순위 청약(무주택우선공급포함)이 제한(2순위로 청약가능)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2002. 9. 3)에 따라 주택소유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시 유의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신청서비스안내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대상	공통	• 1, 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순위가 발생한 분 • 3순위 : 뱅킹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고가 있는 분(단, 우리은행 통장거래 고객에 한함)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 뱅킹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 –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부동산→분양관→사이버청약지점→인터넷청약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www.apl2you.com)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택과 – 19204 호 (2008. 9. 24)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269-1번지 외 3필지
▣ 대지면적 : 6,627.00㎡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6층~15층 3개동 총147세대 중 일반분양 5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특별공급 2세대 포함)
▣ 공급규모 및 공급금액

(단위 : ㎡, 천원)

구분	아파트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택형 (㎡)	세대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공급세대수	층수 (군별)	확장여부	향	층별구분	분양가격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주시)
				세대별공급면적			세대별 기타 공용면적	계							대지비	건축비	총분양금액	1회 (계약시)	1회 (08. 12. 15)	
				전 용	주거공용	소 계														
민영주택	22063-01	2008000814(01)	80.9000	59.8300	21.0700	80.9000	38.7600	119.6600	32.7902	1	10층	확장형	동향	기준층	186,162	119,598	305,760	30,570	122,300	152,890
	22063-02	2008000814(02)	95.3800A	72.4300	22.9500	95.3800	48.2800	143.6600	38.6880	1	15층	확장형	동향	1층	238,072	121,028	359,100	35,910	143,640	179,550
										5				기준층		152,948	391,020	39,100	156,400	195,520
	22063-03	2008000814(03)	95.3800B	72.4300	22.9500	95.3800	48.2800	143.6600	38.6880	2	15층	비확장형	동향	기준층	238,072	152,948	391,020	39,100	156,400	195,520
	22063-04	2008000814(04)	109.8900A	84.4000	25.4900	109.8900	56.2600	166.1500	44.5736	1	10층	확장형	남향	2층	297,195	165,945	463,140	46,310	185,250	231,580
										1				3층		180,885	478,080	47,800	191,230	239,050
	22063-05	2008000814(05)	109.8900B	84.4000	25.4900	109.8900	56.2600	166.1500	44.5736	1	10층	비확장형	남향	기준층	297,195	190,845	488,040	48,800	195,210	244,030
	22063-06	2008000814(06)	113.4000A	84.4000	29.0000	113.4000	54.6900	168.0900	45.9631	2	6~15층	확장형	남향	1층	303,207	154,953	458,160	45,810	183,260	229,090
										2			동향	2층		159,933	463,140	46,310	185,250	231,580
										2			남향	2층		169,893	473,100	47,310	189,240	236,550
										2			동향	3층		174,873	478,080	47,800	191,230	239,050
										1			남향	3층(4층)		174,873	478,080	47,800	191,230	239,050
										2			남향	3층		184,833	488,040	48,800	195,210	244,030
										11			동향	기준층		184,833	488,040	48,800	195,210	244,030
										5			남향	기준층(4층)		184,833	488,040	48,800	195,210	244,030
										8			남향	기준층		194,793	498,000	49,800	199,200	249,000
	22063-07	2008000814(07)	113.4000B	84.4000	29.0000	113.4000	54.6900	168.0900	45.9631	10	15층	비확장형	동향	기준층	303,207	184,833	488,040	48,800	195,210	244,030

▣ 별도품목(발코니 확장) 금액 안내

주택형(㎡)	확장형태	확장면적(㎡)	공급가액(천원)	부가세(천원)	소비자가(천원)
80.90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2 붙박이장	16.413	10,000	1,000	11,000
95.38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2 붙박이장	19.149	12,400	1,240	13,640
109.89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2 붙박이장	20.511	14,300	1,430	15,730
113.40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2 붙박이장	20.511	14,300	1,430	15,730

※ 공통사항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후분양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건설공정이 80%를 초과하여 마이너스 옵션제를 실시할 수 없음.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 분양가 자율화 실시에 의하여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 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임.
• 상기 세대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고임.
• 상기 공급금액은 별도계약품목(발코니 확장)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은 청약자가 청약시 선택하여 청약해야 함.
• 발코니 확장은 별도 설치사항으로 공급가격은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산비용과 추가 설치항목의 가산비용을 정산한 금액으로, 등록세 및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되어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은 건축 공정상 기시공되어 제공되므로, 주택 청약시 확장형 주택에 청약하여야 시공되며 주택 계약시에는 추가로 별도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형 주택은 건축 공정상 기시공되어 제공되므로, 계약시 확장비를 분양대금 납부비율에 따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함.
• 발코니 비확장형 주택의 경우, 건축 공정상 발코니 확장 옵션의 선택이 불가하며 당사에서 발코니 확장 공사를 시공해주지 않음.
• 잔금은 주택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 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50%중 40%의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예금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1순위, 2순위 청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사전에 청약 자격 전산 등록하여야 함
• 입주개시 전 특정 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당 사업지는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적용으로 건설량의 3%를 특별공급 함.
※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당 아파트는 2007. 9. 1 이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되는 민영주택으로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됨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입주시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대지지분은 대한지적공사에서 시행한 택지개발 예정 측량성과도 면적(6,467.6㎡)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공부상 면적인 6,627㎡ 기준시의 수치와 상이하며, 이는 차후 확정 측량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강서구는 2003년 6월 7일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분양권 전매제한 (계약체결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금지)이 적용되며, 1순위자 중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 및 2주택 이상을 소유하신 [청약자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 및 동일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 및 주택소유 사실 포함]분은 1순위 청약이 제한 (2순위로 가능)되며, 상기 요건을 위반하여 당첨이 되었거나 계약 취소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공통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9. 25 [목])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무주택우선공급의 경우 무주택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종액 변경하여야 청약이 가능함 (단 ,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 거주자가 주거지 변경 없이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거주지역 해당 청약예금으로 청약 가능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분양가상한제 주택 기당첨자 또는 기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만 청약 가능함.

2) 특별공급
▣ 특별공급 일정

면적구분	신청 자격	거주 구분	접수 일자	청약접수 장소/시간	추첨 및 당첨자 발표	계약일
전 주택형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비자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2008. 9. 29	강서 센트레빌 3차 분양사무실 / 10:00~14:00	2008. 9. 29 / 강서 센트레빌 3차 분양사무실 / 15:00	정당 당첨자 계약일

▣ 특별공급 세대수

구분	구분	80.90 ㎡	95.38 ㎡	109.89 ㎡	113.40 ㎡
3자녀 특별공급	세대수	0	0	1	1
	서울특별시	0	0	1	1
	경기도	0	0	0	0
	인천시	0	0	0	0

▶ 3자녀 특별 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9. 25 [목]) 현재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만20세이만(1988. 9. 25 이후 출생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내에 있는 자 및 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 규정에 의한 당첨사실이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자는 특별공급에도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에는 신청할 수 없음.
– 3자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는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통계청, 2007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의함)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에게 40%,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10%의 비율로 공급함.
–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건설량의 3%를 특별공급하되, 「우선순위배점표」(신청서 뒷면 참조)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단,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자,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중복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함.(특별공급신청 미달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주택은 우선순위배점표상의 차순위 특별공급신청자에게 공급함
• 신청일시 및 장소 : 2008. 9. 29 [월](10:00~14:00) / 강서 센트레빌 3차 분양사무실
• 동·호수 추첨일시 및 장소 : 2008. 9. 29 [월](15:00) / 강서 센트레빌 3차 분양사무실(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장소 참고)
• 계약 체결일 : 각 순위 정당 당첨자 계약체결일 내
• 3자녀 특별공급 구비서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9. 25 [목]) 현재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특별공급 신청서 및 배점기준표(신청서는 강서 센트레빌 3차 분양사무실 및 각 시, 군, 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당해 시·도 거주기간 등의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다음 해당자에 한함)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혹은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가 아닌 자에 한함.
–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지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통(용도:주택공급신청용)
※ 주민등록등·초본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특별공급 신청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3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해당사항	
			기 준	점 수		
계		100				
① 자녀수	미성년자녀	40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10	2자녀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미만의 자녀
			1자녀	5		
② 세대구성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 · 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③ 무주택 기간		20	세대주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 · 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④ 당해 시 · 도 거주기간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뜻함.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3) 일반공급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 위	면적구분(전용면적)	청약 관련 예금 및 신청 자격	거주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1순위	공통	• 가점제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추첨제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은 적용됨 • 청약자는 가점제 /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청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008. 9. 30 [화]	접수장소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l2you.com • 접수시간 08:30 ~ 18:00	• 일시 : 2008. 10. 9 [목] • 장소 : 강서 센트레빌 3차 분양사무실 및 센트레빌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85㎡ 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 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불입한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1980. 8. 29. 이전 국민은행전 주택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1981. 5. 22 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 중 청약 자격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까지 85㎡이 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전 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 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분 (85㎡ 초과 민영주택에 한함) – 청약 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취득한 분으로서 납입 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금액 예치금액 이상인 분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1순위 청약제한 대상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분 은 1순위 청약 불가(2순위로 청약 가능)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당첨된 사실 포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분 – 2주택 이상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주택소유에 의한 유의 사항 참조) – 2002. 9. 5 이후 가입한 분 중 세대주가 아닌 분(2002. 9. 5 포함)				
	2순위	공통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 (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접수) • 청약자는 가점제 /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청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2008. 10. 1 [수]		
		85㎡ 이하	– 청약 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이 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순위 자격을 취득한 분으로서 납입인정금액이 85㎡이 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전 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				
	3순위	전 주택형	– 제1순위 또는 제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분		2008. 10. 2 [목]	•접수장소 : 우리은행 본 · 지점 •접수시간 : 09:30 ~ 16:30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본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노약자, 장애우 창구청약 가능 시간 : 09:30 ~ 16:30, 단,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
※ 3순위 청약 신청은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며,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에서 청약 가능함. (청구접수시간 : 09:30 ~ 16:30)

▣ 청약가점제 적용 안내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2007. 9. 1부터 시행되는 청약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일정 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구 분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
가점제	75%	50%
추점제	25%	50%

- 가점제 입주자 선정 방법 : 가점점수/감점점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1)에 의한 점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자동으로 추첨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제의 점수는 "0점"으로 계산됨.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l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1)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 수	가점구분	점 수
① 무주택기간	32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 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계	84	-			

2)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도 무주택기간을 가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가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60㎡ 초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 ·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단, 2007. 8. 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 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세대원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 적용 기준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외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 경과기간 및 요건(전용면적기준)
- 85㎡ 초과 102㎡ 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 청약부금 가입자의 경우 85㎡이 하 민영주택에 청약신청이 가능함.
- 평형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자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기 예치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예치금액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평형변경한 자 신청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청약신청 가능
  - 큰 주택규모로 변경한 분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분은 변경 후 평형만 청약신청 가능(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 전 평형만 청약신청 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청약신청 가능
- 94. 8. 15 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용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1순위 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함.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2.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3.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4.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시행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4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5.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 · 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치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①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②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③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6. 주택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7.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8.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계획구역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아파트를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또는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9. 소형 · 저가주택 1호를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

「전용면적 60㎡ 이 하 이 며,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60㎡초 과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 · 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됨(*장기간보유특례)
① (현재 : 소형 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 현재 소형 · 저가주택을 10년 미만 보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 안됨 (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중전 무주택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② (현재 : 무주택자) 중전에 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해당 소형 · 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단, 2007. 8. 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 신청접수방법

-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따름. • 특별공급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강서 센트레빌 3차 분양사무실에서 청약 신청하여야 함.
- 일반공급
  - 공통 : 충별, 동별, 호별, 향별, 군별, 라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지역 거주자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같은 날짜에 접수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는 접수치 않음.
  - 1, 2순위 : 청약신청자 전원 가점제 청약접수를 원칙[입주자선정방법(가점제,추첨제) 선택 불가하며 가점제로 자동 청약접수함]으로 하며, 가점제 입주자선정결과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자로 전환하여 청약접수함.
    단, 1순위자에 한해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접수시 1순위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분류함. - 3순위 : 충전대로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함.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은행 창구 방문 청약 신청 방법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배우자 포함) 신청시	공 통	• 주택공급신청서(1,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우리은행 비치) • 청약예금 · 청약부금 통장(1, 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 2순위자에 한함)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 •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제출 •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 여부 등) - 주민등록증 사본 1부(또는 주민등록등 · 초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제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 · 비속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주택공급신청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신청접수 장소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서류 중 주민등록등 · 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함.
※ 신청자 착오로 인해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지지 않음.

▣ 인터넷, ARS당첨자 발표이용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인터넷, ARS청약신청 서비스안내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소유자)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통장 소지자)
이용대상	이용방법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l2you.com)접속 → 인터넷청약개인고객 → 당첨사실조회 → 최근당첨사실조회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당첨확인
	이용기간	• 2008. 10. 09 ~ 2008. 10. 19 (10일)	• 2008. 10. 09 ~ 2008. 10. 19 (10일)
전화(ARS)	이용방법	• 1369(서비스코드 : 5#)	• 국민은행 콜센터(1588-9999)(서비스코드 : 701)
	이용기간	• 2008. 10. 09 ~ 2008. 10. 19 (10일)	• 2008. 10. 09 ~ 2008. 10. 19 (10일)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 상	• 주택청약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 국민은행 주택청약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 2008. 10. 09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008. 10. 09.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3순위 청약신청금

구 분	공 통	신청금 납부 방법
청약신청금	200만원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가능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람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발표 익영업일 2008. 10. 10 [금] 이후 [평일 09:30 ~ 16:30] • 환불장소 : 청약 접수한 우리은행 본 · 지점
- 구비서류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주민등록증, 신청시 사용한 인장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 시에 한함)
- 제3자 대리환불시 추가구비사항 :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이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제3자의 인장 및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우리은행 본 · 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계약 체결해야 하며,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 강서 센트레빌 3차 분양사무실에서 신청자 입회하에 공개추첨에 의해 동 · 호수를 결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
공 통 (무주택우선 및 일반공급)	•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 : 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 · 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단, 1순위자 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추첨제로 입주자 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공급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공급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동일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신청자가 수도권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수도권지역 거주자 신청분은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신청자수가 미계약세대 또는 계약취소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함 (동 · 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예비당첨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입주예정일 안내

- 입주예정일 : 2009년 3월(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음.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정당 당첨자 2008.10.14 [화] ~ 2008.10.16 [목] (3일간, 시간 10:00 ~ 16:30) - 무주택 우선공급 및 1순위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 우리은행 (계좌번호 : 1005 - 501 - 356418) 예금주 : 동부건설(주)(사업시행주체인 남양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의 요청에 의해 분양업무를 위임받은 동부건설(주)의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함)
- 계약체결 장소 : 강서 센트레빌 3차 분양사무실(위치 및 전화번호 참조)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공 통	• 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 • 계약금(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및 인감도장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 (거주지역, 세대주, 20세 이상 여부 등)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 · 초본 1통[배우자 분리시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 무주택우선공급 청약자의 경우 [5년이상 세대주기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단,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가족관계증명서 1통(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 장애인 수첩 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 1부(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분에 한함)
- 주택소유현황 서약서(견본주택 비치)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무주택우선공급 및 1순위 당첨자 중 해당자)	• 부적격으로 통보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 · 비속 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아파트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조건 등

- 계약체결 이후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 무주택우선공급 당첨자 및 1순위 당첨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로 판명될 경우 - 2002. 9. 5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자로 판명될 경우
  - 1, 2, 3순위 당첨자 중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당첨된 자 또는 기당첨된 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재당첨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이 각각 1순위로 신청하여 중복당첨된 경우에는 1건만 계약체결 가능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5항에 의거)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작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아파트의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 명칭 및 동번호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입주 시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 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를 준수함.

▣ 주택보증에 관한 사항

▣ 연대보증인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기간	보증금액	보증서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 13,351,250,000	01282008-101-0009700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의 범위 :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대상의 제외사항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 지체상금
13.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사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주택분양보증약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중 전체입주금의 90%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유의사항

1. 기 청약자 전산수록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간, 부양가족 등) 등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반드시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2.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확인 바람.
3.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4.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 X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5.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6.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국토해양부 주관 30415-26905(90. 10. 15)]에 의거하여 철수할 수 있음(단, 평면설계 및 마감 자재 등은 촬영 보존)
7.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사의 결과에 따라 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8.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한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신청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9.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함.
10.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1.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음.
12.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동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13.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14.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함.
15. 주택감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도배, 도장 기타 경미한 공사에 대한 입주자사전점검방법은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입주자사전점검운영요령]에 따름.
16. 본 아파트의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제46조에 따라 적용됨.
17.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18. 본 아파트 일부 주택형(95.38㎡, 113.40㎡)의 경우, 동 · 호수 라인에 따라 세대내 일부 구조의 차이가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한 사안으로 시공사 및 시행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카다로그 참조)
   - 95.38㎡ 형 주택의 경우, 201동 5호 라인과 6호 라인의 주택들은 각 세대 침실 2창의 폭에서 차이가 있음.(카다로그 참조 - 113.40㎡ 형 주택의 경우, 101동 3호 라인 확장형 세대의 보조주방 측후면 발코니의 창호폭이 동일 주택형의 창호폭과 차이가 있음.(카다로그 참조)
   - 본 아파트 101동 203호(113.40㎡)의 경우, 침실2 발코니에서 구조보가 보임.
19. 발코니 확장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벽체의 단열을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가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음.
20. 현장여건, 주변개발등 사업부지 및 주변현황의 확인에 대한 책임은 청약 및 계약자 본인에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21.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22. 단지조경 및 세부식재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음.
23.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24. 홍보 카다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공원, 도로망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 시책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5. 층 · 호수는 동 · 호수 배치도를 필히 참조하시기 바람.
26.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항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만 설치됨.
27. 경관 조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28.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 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29. 1, 2단지 대로변 일부동 앞에는 사업시행인가 조건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이었으나, 사업시행인가 변경승인으로 인해 타시설물로 대체 또는 미설치될 수 있음.
30. 단지를 관통하는 도시 계획도로에 의하여 단지가 1, 2단지로 구분되오니 현장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31. 본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77-7966)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건축 : ㈜화신종합기술단건 축사사무소 (336,440,419원, VAT 별도) / 전기,정보통신 : 유원ENF주식회사 (50,000,000원, VAT 별도) / 소방 : 유원ENF주식회사 (20,000,000원, VAT 별도)

▣ 시행자, 시공자, 연대보증인

구 분		주 소	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주체	남양연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266-23 서부빌딩 2층	254271-0005506	02)2662-0212
시공자	동부건설(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1-10	서울특별시-주택2003-012	02)3484-2114

▣ 견본주택 사이버 모델하우스 : gangseo.centreville.co.kr

▣ 견본주택 위치 및 안내전화 :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 269-1번지 강서 센트레빌 3차 ☎ 1577-7966

강서 센트레빌 3차 방화

※ 본 지면상의 단지배치도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이므로 시설물의 위치, 디자인, 구조 등이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

구 분	일반분양	확 장	비확장
80.90㎡(24)	1	1	0
95.38㎡(28)	8	6	2
109.89㎡(33B)	3	2	1
113.40㎡(34)	45	35	10
계	57	44	13

임대, 조합원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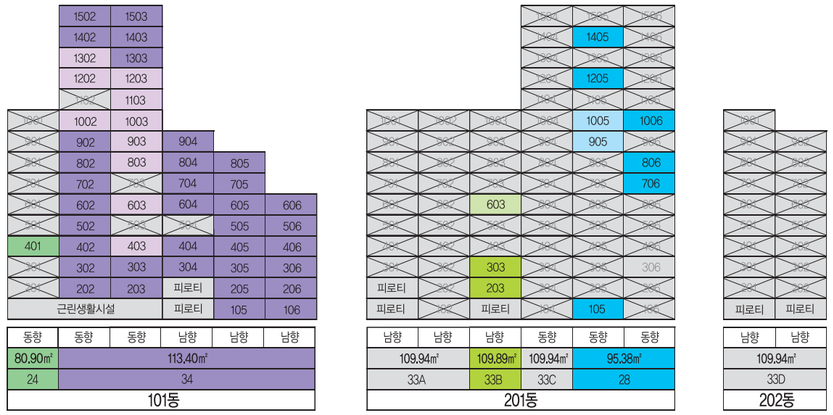

▲ 동호수 배치도